

● 제319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879, 880, 881)

2023. 6.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879, 880, 881

### **I. 결산안 개요**

####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3. 05. 30.
- 다. 회 부 일 : 2023. 06. 01.

### **II. 결산현황**

####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498,737백만원
- 징수결정액 : 436,684백만원
- 실제수납액 : 434,503백만원
- 미수납액 : 2,140백만원
- 결손처분 : 42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2,098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5%(전년도 98.9%)임.

##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계	498,737	436,684	434,503	42	2,140	99.5%
세 외 수 입	66,127	73,529	71,347	42	2,140	97.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43,304	42,884	42,785		99	99.8%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2,810	30,630	28,547	42	2,041	9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	16	16			100.0%
지 방 교 부 세	850	850	850			100.0%
지 방 교 부 세	850	850	850			100.0%
보 조 금	427,457	357,864	357,864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427,457	357,864	357,864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03	4,442	4,442			100.0%
보 전 수 입 등	4,303	4,442	4,442			100.0%

###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130,216백만원
- 예산증감 : 42,647백만원
- 예산현액 : 1,172,863백만원
- 지 출 액 : 982,550백만원
- 이 월 액 : 18,179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18,129백만원
- 불 용 액 : 154,005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1%(전년도 1.6%)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54,005	73,624		70,051	789	9,541	

< 2022년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
<b>총 예 산</b>	1,172,863	982,550	18,179	18,129	154,005	13.1
<b>사 업 예 산 계</b>	1,160,202	970,729	18,178	17,944	153,348	13.2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53,825	51,819	173	288	1,544	2.9
시민건강수준 향상	109,443	100,733	7,988	9	713	0.7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144,416	140,146		198	4,071	2.8
생활보건 관리 향상	512,204	370,174	526	1,759	139,745	27.3
긴급재난지원	3,341	3,341			-	0.0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177,606	160,078	159	14,938	2,431	1.4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4,762	14,691		21	50	0.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2,187	1,784		272	130	5.9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88,794	84,810	3,792		192	0.2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21,108	16,225	3,947	312	624	3.0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8,530	7,508	177	-	845	9.9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	8,465	5,823	1,387		1,255	14.8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	15,521	13,597	29	147	1,748	11.3
<b>일 반 예 산 계</b>	12,662	11,821	0	184	657	5.2
행정운영경비	8,568	7,817	-	184	566	6.6
재무활동	4,094	4,004			90	2.2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17건, 6,313백만원
- 다. 예산 이체 : 134건, 369,613백만원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7건, 17,014백만원
- 마. 예비비 사용 : 5건, 3,079백만원
-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23건, 18,179백만원
  - 명시이월 : 7건, 4,277백만원
  - 사고이월 : 16건, 13,902백만원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357,864백만원
  - 집행액 : 347,460백만원
  - 이월액 : 650백만원
  - 집행잔액 : 9,799백만원

###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 〈 2022년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2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62,529	△12,869	4,604	17,473	49,660

- 기금결산현황

〈 2022년도 기금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32,133	계	32,133
용 자 금 회 수	2,005	비용자성사업비	2,684
예 탁 금 회 수	20,000	용 자 성 사 업 비	14,787
예 치 금 회 수	7,529	기 본 경 비	2
이 자 수 입	1,319	기 타 지 출	0
기 타 수 입	1,280	예 치 금	14,660
		예 탁 금	0

4. 채권현재액 : 22,64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2년말 현재액 ②	전년대비 증감 ③ = ② - ①
금 액	8,060	22,647	14,587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건물 424,429 $m^2$                     506,372백만원
- 토지 344,426 $m^2$                     1,182,855백만원,
- 기타 69건                            8,196만원,

총 1,697,424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2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794,379		96,955	1,697,424	
행정 재산	계	1,617,062		115,508	1,501,554
	공용재산	1,448,275		115,703	1,332,572
	공공용재산	168,787	194		168,981
일반재산	177,317	18,553		195,87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2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974개,  
현재액 12,584백만원

〈 2022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등	소계	매각	관리전환 등	소계	
합계	수량	931	37	309	346	-	303	303	974
	금액	14,043	380	339	719	-	2,178	2,178	12,584
일반회계	수량	931	37	309	346	-	303	303	974
	금액	14,043	380	339	719	-	2,178	2,178	12,584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세입 결산 검토

####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987억원으로, 징수결정액(4366억 6800만원) 중 21억 4000만원이 미수납되고, 4200만원이 불납결손액 되어 4345억원이 실제 수납됨.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5%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수납률 보다 0.6% 증가함.

#### 〈표-1〉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2년도	498,737	436,684	434,503	42	2,140	99.5
2021년도	342,800	367,362	363,410	5	3,947	98.9
2020년도	243,338	246,710	244,799	5	1,907	99.2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현액은 4987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예산현액 3428억원 보다 1559억원이 증가됨.
  - 예산현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① 보조금(1598억 2300만원 증가), ② 보전수입등내부거래(36억 8200만원 증가)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2〉 2022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주요 세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1		2020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498,737	100.0	342,800	100.0	243,338	100.0
세외수입	66,127	13.3	65,279	19.0	65,903	27.1
지방 교부세	850	0.2	1,066	0.3	4,240	1.7
보조금	427,457	85.7	267,634	78.1	172,238	70.8
지방채			8,200	2.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303	0.8	621	0.2	957	0.4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1)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1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39억 4700만원 보다 18억 700만원이 감소함(표-1 참고).
- 미수납액의 경우, 주로 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14억 8513만원 발생), ② ‘지난연도수입’(5억 4174만원 발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3〉 2022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과부족 상세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254,080	202,193	176,933	25,260	(서북병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 및 구내 입점 점포매출 저조 등으로 임대료 수입 감소
기타사업 수입	113,744	99,267	90,995	8,272	(공공의료추진단) 당초 예상(최근 3개년 이식실적) 대비 제대혈 공급량 다소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기타이자 수입	441,217	629,208	563,732	65,475	(보건의료정책과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보조사업 축소 등으로 보조금 이자반납액 증가
시도비보 조금등반 환수입	19,951,853	22,225,298	20,740,165	1,485,132	(보건의료정책과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보조사업 축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액 규모 당초 예상대비 증가
자체보조 금등반환 수입	148,296	3,906,129	3,898,916	7,212	(보건의료정책과 등) 2022년 새로 편성한 예산과목으로 당초 예상 대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규모 증가
그외수입	615,750	438,891	432,452	6,438	(보건의료정책과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당초 예상대비 그외수입 감소
지난연도 수입	2,001,535	3,809,712	3,225,762	541,742	(보건의료정책과 등) 2021년 미수납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2022년도 지난연도 수입 증가

## 2)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1)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예산이 1건 285만원 발생함.

〈표-4〉 2022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과징금	-	2,850	2,850	2,850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구매 계약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 못한 수입 발생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조 1302억 1600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예산현액은 1조 1728억 6300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9825억 5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181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고, 181억 2900만원이 보조금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540억 500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률은 13.1%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불용률 보다 무려 11.5% 증가함.

〈표-5〉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 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2년도	1,130,216	1,172,863	982,550	18,179	18,129	154,005	13.1
2021년도	700,304	710,783	658,720	39,883	1,116	11,064	1.6
2020년도	601,065	631,146	606,565	9,258	1,154	14,169	2.2

##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sup>3)</sup>, 이용·이체<sup>4)</sup>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6〉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22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변경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17건(63억 1300만원), 예산변경 27건(170억 1400만원), 예산이체 134건(3696억 1300만원), 예비비 사용 5건(30억 7900만원)으로 나타남.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표-7〉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건수	-	17	27	134	5
승인금액	-	6,313	17,014	369,613	3,079

###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5)에 따라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7건, 전용금액은 63억 13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25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31억 9600만원) 보다 31억 1700만원 증가함.

## 〈표-8〉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3,281,305	296,250		04-06	-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622,480		296,250		526,075

- 5)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209,166	296,250	04-06	-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918,730	296,250		526,075
3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10,752,459	296,250	04-06	-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1,214,980	296,250		526,075
4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5,210,500	296,250	04-06	-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1,511,230	296,250		526,075
5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2022)	자치단체 자본보조	3,570,000	3,570,000	04-27	-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2022)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70,000		-
6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1,102,128	500,000	08-18	1,007,095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35,000	500,000		-
7	보건의료 정책과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3,882,270	470,000	12-27	-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880,000	470,000		-
8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기타자본이 전	80,000	80,000	12-20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090,000	80,000		48,517
9	정신 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0,602,128	56,195	11-09	1,007,095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3,534,531	56,195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	감염병 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250,000	69,810	01-06	635,548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자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	69,810		69,810
11	감염병 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180,190	4,300	03-07	635,548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기간제 근로자등보 수		4,300		2,239
12	감염병 관리과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행사운영비	15,000	5,000	11-21	-
		결핵 관리-보건소 결핵관리(국비)	포상금		5,000		231
13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8,000,000	39,600	01-24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 수		39,600		2,255
14	보건의료 정책과 (現공공 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264,000	75,000	01-17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75,000		-
15	보건의료 정책과 (現공공 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407,000	143,000	01-17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공공운영비		143,000		36,995
16	보건의료 정책과 (現공공 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5,270,500	60,000	03-30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75,000	60,000		-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7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의료및구료비	1,617,313	55,000	09-27	221,776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257,833	55,000		92,995

##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  
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27건, 변경금액은 170억  
14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변경 건수는 12건 감소하였으며 변경액은  
직전 회계연도(72억 5100만원) 보다 97억 6300만원 감소함.

〈표-9〉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10,000	4,462	11-29	1
		공공보건의료 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특정업무경비	105,000	4,462		399
2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96,504	638	11-29	6,227
		공공보건의료 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특정업무경비	109,462	638		399
3	보건의료 정책과	대사증후군 관리	공공운영비	30,000	2,500	12-26	1,517
		공공보건의료 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51,912	2,500		258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4	스마트 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62,992	3,673,800	06-21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40,615			3,673,800
5	스마트 건강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246,831	18,784	07-13	67,516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5,650			18,784
6	스마트 건강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6,700	9,019	08-04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47,833			9,019
7	스마트 건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55,500	227,609	08-04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56,852			227,609
8	스마트 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89,192	110,000	11-07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00,000			110,000
9	스마트 건강과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650,000	650,000	12-13	-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650,000
10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817,146	199,050	02-08	427,123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682,061			199,050
13	정신 건강과	정신건강증진 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851,758	18,178	02-18	1,991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8,178
12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618,096	4,500	03-02	427,123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881,111			4,500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613,596	32,000	07-13	427,123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0	32,000		-
14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581,596	150	11-29	427,123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71,505	150		-
15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964,470	7,995,740	02-28	74,589,684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7,995,740		64,278,894
16	감염병 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5,422,776	57,401	04-27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57,401		8,214
17	감염병 관리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365,375	4,485	04-27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포상금		4,485		1,269
18	감염병 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2,175,890	50,000	08-22	635,548
		코로나19 환자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50,000		1,846
19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7,960,400	132,000	09-01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32,000		11,974
20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7,828,400	3,605,629	11-21	-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22,966,961	3,605,629		2,107,629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1	감염병 연구센터	감염병 정책연구·평 가 및 대응 모듈 개발	사무관리비	242,600	22,000	08-19	35,876
		감염병 정책연구·평 가 및 대응 모듈 개발	공공운영비	3,000	22,000		882
24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55,000	55,000	01-18	-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자본)	자산및물품 취득비		55,000		1,582
22	보건환경 연구원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40,100	5,400	11-21	3,330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특정업무경비	171,000	5,400		212
25	보건환경 연구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210,320	100,000	12-12	15,642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289,580	100,000		22,083
23	보건환경 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국내여비	2,200	1,456	12-02	1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국비)	재료비	72,800	1,456		375
26	은평병원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 스 수준관리	의료및구료비	708,982	25,000	11-15	293,196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의료및구료비	217,385	25,000		4,566
27	서북병원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기타보상금	389,657	9,600	01-26	98,356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포상금	983,244	9,600		26,520

## 다)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sup>6)</sup>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34건, 이체금액은 3696억 13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2제1항<sup>7)</sup> 개정 에 따라(정신건강과, 공공의료추진단 신설) 예산을 이체하게 된 것임
  - 참고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이체 건수는 무려 124건 증가하였고, 이체액은 직전 회계연도(232억 8100만원) 보다 3463억 3200만 원 증가함.

〈표-10〉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 준향상			4,000	2022-0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 준향상	4,000	4,000		

6)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정신건강과·감염병관리과·코로나19대응지원과·식품정책과·감염병연구센터·공공의료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2.8.18>

② ~⑪ <생략>.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중화장실 시 설·운영관리 수 준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	38,000	38,000	38,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공중화장실 시 설·운영관리 수 준향상	민간경상사업 보조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민간 개방화장 실 지정·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40,000	540,000	54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민간 개방화장 실 지정·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민간 개방화장 실 지정·운영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50,000	50,000	5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민간 개방화장 실 지정·운영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중화장실 여 성용 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 보조	200,000	200,000	20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공중화장실 여 성용 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 보조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90,000	390,000	39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 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50,000	50,000	5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 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00	2,000	2,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	4,000	4,000	4,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미용예 술경연대회 개 최	행사운영비			15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서울시 미용예 술경연대회 개 최	행사운영비	150,000	150,000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WHO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 건센터 운영	국제부담금			77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WHO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 건센터 운영	국제부담금	770,000	770,000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독성물 질 중독관리센 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297,668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서울형 독성물 질 중독관리센 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297,668	297,668		
1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독성물 질 중독관리센 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사업 비			104,703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서울형 독성물 질 중독관리센 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사업 비	104,703	104,703		
1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 중 화 장 실 CCTV 등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372,6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공 중 화 장 실 CCTV 등 안전 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372,600	372,600		
1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국가직접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서울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국가직접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300,000	300,000		
1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 환	국고보조금반 환금	998,813		692	2022-0 8-2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국고보조금 반 환	국고보조금반 환금	2,436,017		692	
17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552,32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552,320	1,552,32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8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09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1,090,000	1,090,000		
1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908,053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908,053	908,053		
20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53,901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53,901	253,901		
21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7,5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7,500,000	7,500,000		
22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1,522,60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1,522,606	1,522,606		
23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 득비			1,471,481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 득비	1,471,481	1,471,481		
24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자본이전			8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헬스케 어 시스템 구축	기타자본이전	80,000	80,000		
25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모바일 헬스케 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03,899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모바일 헬스케 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03,899	403,899		
2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1,205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중독관리통합지 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1,205	371,205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00	75,000	75,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민간위탁금	5,721,643	5,721,643	5,721,643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민간위탁금				
2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520,297	3,520,297	3,520,297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0	18,000	18,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3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406,000	406,000	406,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무관리비				
3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1,765,572	1,765,572	1,765,572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3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0,602,128	20,602,128	20,602,128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076,524	3,076,524	3,076,524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32,000	32,000	32,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 역사회전환시설 운영	기타자본이전			1,5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 역사회전환시설 운영	기타자본이전	1,500	1,500		
3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취 업지원시설 운 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628,64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취 업지원시설 운 영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628,640	628,640		
3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취 업지원시설 운 영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43,74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취 업지원시설 운 영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43,740	43,740		
3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 원)			896,602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 원)	896,602	896,602		
4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2,37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2,370	202,370		
4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4,000	4,000		
4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44,50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844,506	3,844,506		
4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581,59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정신건강복 지센터 운영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581,596	11,581,596		
4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치 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9,5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치 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9,500	379,5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4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사업 종사자 정신건 강증진	민간위탁금			3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건강사업 종사자 정신건 강증진	민간위탁금	32,000	32,000		
4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1,699,562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인력확충	민간위탁금	1,699,562	1,699,562		
4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인력확충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57,53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건강증진시 설 인력확충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957,536	1,957,536		
4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통합정신건강증 진사업	민간위탁금			31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통합정신건강증 진사업	민간위탁금	312,000	312,000		
4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통합정신건강증 진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54,5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통합정신건강증 진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54,500	3,754,500		
5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48,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48,000	348,000		
5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23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232,000	232,000		
5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205,611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자살예 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205,611	3,205,611		
5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265,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265,000	2,265,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5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2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20,000	20,000		
5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56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1,560,000	1,560,000		
5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주택 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1,088,173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자 립생활주택 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1,088,173	1,088,173		
5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 원주택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 원주택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10,000		
5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 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680,829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질환자 지 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680,829	680,829		
5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무관리비			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무관리비	2,000	2,000		
6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414,722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3,414,722	3,414,722		
6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37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 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372,000	372,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6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무관리비				
6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30,000	230,000	23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심리지원센 터 운영	민간위탁금	1,616,073	1,616,073	1,616,073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심리지원센 터 운영	민간위탁금				
6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강제입원 절차 보조인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200,000	200,000	2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강제입원 절차 보조인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6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민간위탁금	212,934	212,934	212,934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민간위탁금				
6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32,335	532,335	532,335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 보조	116,666	116,666	116,66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 보조				
6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 진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89,385	389,385	389,385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 진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7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자살 유족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608,400	608,400	608,4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자살 유족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7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45,2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자살 유족 지원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45,200	445,200		
7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40,178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40,178	40,178		
7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청년중독관리사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5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청년중독관리사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7,500	37,500		
7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325,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325,000	325,000		
7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자 본)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5,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권역정신응급의 료센터 운영(자 본)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5,000	35,000		
7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광역 치매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52,309	2022-0 8-2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광역 치매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52,309	952,309		
7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운영(국 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3,534,531	2022-0 8-26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운영(국 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3,534,531	23,534,531		
7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통합 방문건강 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618,913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통합 방문건강 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618,913	6,618,913		
7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사무관리비			108,645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사무관리비	108,645	108,645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8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공무원 교육여 비	40	40	40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공무원 교육여 비				
8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민간위탁금	250,000	250,000	25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민간위탁금				
8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8,502,221	28,502,221	28,502,221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찾·동 방문건강 관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3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센터 운영(자 체)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센터 운영(자 체)	사무관리비				
84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센터 운영(자 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000	3,000	3,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지역 치매안심 센터 운영(자 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5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치매치료 및 관 리비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231,667	2,231,667	2,231,667	2022-0 8-26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치매치료 및 관 리비 지원(전환 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6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 원	민간위탁금	8,371	8,371	8,371	2022-0 8-26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 원	민간위탁금				
87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3,972	113,972	113,972	2022-0 8-26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8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재가암환자 관 리(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17,683	217,683	217,683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재가암환자 관 리(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89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AI·IoT기반 어 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86,163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AI·IoT기반 어 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86,163	1,586,163		
90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형 정신응 급의료체계 운 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1,17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정신응 급의료체계 운 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1,172,000	1,172,000		
91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서울시 치매연 수원 건립	사무관리비			50,000	2022-0 8-26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서울시 치매연 수원 건립	사무관리비	50,000	50,000		
92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 비(방문건강관 리)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36,750	2022-0 8-29
	시민건강국 스마트 건강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 비(방문건강관 리)	공무직(무기계 약)근로자보수	36,750	36,750		
93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자치구 재택치 료 활성화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475,000	2022-0 8-24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재택치 료 활성화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475,000	1,475,000		
94	시민건강국 감염병 관리과	자치구 재택치 료 간호인력 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65,850	2022-0 8-24
	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재택치 료 간호인력 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65,850	1,865,850		
95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 예방접 종 실시(희석 제)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8,799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예방접 종 실시(희석 제)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88,799	188,799		
96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3,914,96 1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13,914,96 1	113,914,96 1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7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158,000	158,000	158,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98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2,282,000	2,282,000	2,282,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				
99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60,000	60,000	60,000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19 검사 소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				
100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대응지원과	방문접종팀 인 건비 지원(국 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9,094	49,094	49,094	2022-0 8-2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방문접종팀 인 건비 지원(국 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01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사무관리비	135,000	135,000	135,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사무관리비				
10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공공운영비	143,000	143,000	143,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공공운영비				
10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6,080,250	6,080,250	6,080,25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10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6,189,000	6,189,000	6,189,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5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2,400,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2,400,000	2,400,000		
106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13,951,055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13,951,055	13,951,055		
107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371,516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371,516	5,371,516		
108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금			595,15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금	595,150	595,150		
10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30,000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30,000	30,000		
11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878,916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878,916	8,878,916		
111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956,609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956,609	1,956,609		
11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225,214	2022-0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225,214	8,225,214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북 부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사업 비		639,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북 부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사업 비	639,000	639,000	
11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남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금		11,422,209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남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금	11,422,209	11,422,209	
115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서 남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사업 비		665,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서 남병원 위탁운 영	민간위탁사업 비	665,000	665,000	
116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장 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789,03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장 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2,789,036	2,789,036	
117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 장 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 비		282,336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장 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민간위탁사업 비	282,336	282,336	
118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지방의료원 시 설장비 현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924,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시 설장비 현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924,000	3,924,000	
11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지방의료원 기 능특성화 및 감 염병 대응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996,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기 능특성화 및 감 염병 대응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996,000	3,996,000	
12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지방의료원 정 보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3,2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지방의료원 정 보화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 원)	33,200	33,2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21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 비			378,17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 비	378,170	378,170		
12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2,0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2,000,000	2,000,000		
12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1,3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1,300,000	1,300,000		
12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리비			3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리비	300,000	300,000		
125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부대비			1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부대비	100,000	100,000		
126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비			1,995,5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비	1,995,500	1,995,500		
127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감리비			35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감리비	350,000	350,000		
128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보라매병원 안 심호흡기 전문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1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 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29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특별시립병 원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28,587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립병 원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28,587	28,587		
13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2,548,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운영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2,548,000	2,548,000		
131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 원)			32,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 원)	32,000	32,000		
132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안심건강검진 우수병원 확대 지원	사무관리비			24,96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안심건강검진 우수병원 확대 지원	사무관리비	24,960	24,960		
13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공공재활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15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재활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134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서울형 공공병 원 건립	연구용역비			300,000	2022-0 8-2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공공병 원 건립	연구용역비	300,000	300,000		

## 2) 예비비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2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 5건, 30억 7948만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2573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00만원이 발생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비비 사용 건수는 1건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예산액은 직전 회계연도(12억 2100만원) 보다 18억 5800만원 증가함.

〈표-11〉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1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43,000	210,897	32,103	03-08	04-08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소아전용 외래진료센터를 긴급히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2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622,480	188,780	433,700	03-08	04-11	
3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100,000	78,578	21,422	03-08	04-07	

- 8)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위 : 천원)

순번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결 정일자	지출일 자	
4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운영	1,800,000	1,799,948	52	02-11	03-29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 직영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자체)	314,000	295,348	18,652	11-10	11-22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검사 진단시약 긴급구매를 위한 예비비 사용

### 3)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관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사고이월은 16건 139억 200만원, 명시이월은 7건 42억 7700만원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은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의결 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시점부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예산집행 중 계획된 예산이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점부터 충분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sup>9)</sup>
- 특히 사고이월이 한 번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속적인 사고이월의 발생을 초래하기도 함.

9) 민기 외(2017).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표-12〉 이월 제도의 구분

구 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 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표-13〉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650,0000			650,000	추경편성 이후 국비 교 부된 건으로 명시이월	명시이월
2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비	3,300,000	1,205,634	1,185,684	2,000,000	코로나19 전담병원 운 영으로 인한 현장조사 지연 등으로 설계기간 연장되어 명시이월	명시이월
3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리비	300,000			300,000	코로나19 전담병원 운 영으로 인한 현장조사 지연 등으로 설계기간 연장되어 명시이월	명시이월
4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설부대비	100,000	1,800	1,800	98,200	코로나19 전담병원 운 영으로 인한 현장조사 지연 등으로 설계기간 연장되어 명시이월	명시이월
5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설비	1,995,500	1,990,035	1,124,040	871,460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 라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명시이월
6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감리비	350,000			350,000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 라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명시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7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0,000	2,440	2,440	7,560	사업규모 조정 등에 따 라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	명시이월
8	재난응급의료 무선 통신망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40,000	39,999	20,648	19,351	재난의료지원 출동물품 관련 계약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3. 1.) 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9	대사증후군 관리	전산개발비	321,982	315,469	161,469	154,000	대사증후군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으로 납기 미도래(~23. 2.)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10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공공운영비	908,053	889,566	97,636	791,930	건강관리도구 구매 계약기간이 '22. 11. ~ '23. 12.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11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53,901	246,500	70,000	176,500	8월 추경예산 확정 후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등에 따라 11월에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23. 3.)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1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9,022,606	8,864,936	2,495,066	6,369,870	건강관리도구 구매 계약기간이 '22. 11. ~ '23. 12.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3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64,900	463,991	311,491	152,500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컨설팅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3. 5.)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14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60,000	155,000		155,000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3. 1.)로 사고이월	사고이월
15	역학조사 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150,000	147,400	109,180	38,220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 운영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23. 7.)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16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연구용역비	200,000	180,000		180,000	서울시 환경유해인자 노출실태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하여(~'23. 6.) 사고이월	사고이월
17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시설비	166,000	159,454		159,454	이동병상 철거에 따른 주차장 원상복구를 위한 바닥공사로 코로나19 재유행(~'22. 11.) 이후 공사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23. 3.)로 사고이월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8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연구용역비	300,000	260,000	95,000	165,000	서울형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준공기한(~'23. 6.) 미도래	사고이월
19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 소 합동청사 건립	시설비	3,720,452	3,720,452	75,803	3,644,649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계약심사) 이행 후 '22. 11. 공사착공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사고이월
20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 소 합동청사 건립	감리비	301,915	301,915		301,915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절차(계약심사) 이행 후 '22. 11. 공사착공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사고이월
21	어린이병원 청사시 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435,503	1,434,753	1,257,789	176,963	병원 정전사고('22.9.)에 따른 전기설비 긴급발주('22.10.) 후 납품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사고이월
22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 진	시설비	1,387,000	1,387,000		1,387,000	9월 말에 계약된 설계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3. 5.)에 따라 사고이월	사고이월
23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시설비	3,131,820	2,849,747	2,820,347	29,400	치매안심병동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3. 2.)하여 사고이월	사고이월

#### 4)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 불용액은 ① 회계연도중 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2022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불용액은 총 1540억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발생규모가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35건, 1501억 1백만으로 나타남.

〈표-14〉 2022년도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7,126,924	6,929,924	197,000	2.8%	신규직원 채용 지연 대표이사 조기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경비 잔액 발생
2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6,312,420	6,100,920	211,500	3.4%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액 변동(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3	보건의료정책과	세이프약국 운영	688,933	552,334	136,599	19.8%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대면상담 진행의 어려움으로 세이프약국 약력관리 사업 추진 관련 집행잔액 발생
4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 (전환사업)	286,000	153,035	132,965	46.5%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의료관광 실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5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2,161,160	1,581,560	579,600	26.8%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소아외래 진료센터 조기운영 종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제사유
6	보건의료정책과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320,520	140,404	180,116	56.2%	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사업기간 단축되어 집행잔액 발생
7	스마트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4,378,361	6,452,679	587,382	4.1%	건강관리 도구 구매계약 등 계약 낙찰차액 및 헬스케어 매니저 중도 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상담센터 집행잔액 발생
8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국비)	9,241,940	7,911,984	1,274,706	13.8%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액 변동(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9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2,717,505	21,596,178	1,121,327	4.9%	민간위탁 계약심사에 따른 차액 발생 및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차액분 발생
10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3,110,024	2,990,812	119,212	3.8%	코로나19로 인한 입소자 수 감소로 불용액 발생
11	정신건강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11,581,446	11,154,323	427,123	3.7%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전담인력의 잦은 퇴사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차액분 발생
12	정신건강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3,785,611	3,660,943	124,668	3.3%	민간위탁 계약심사 결과 조정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13	정신건강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아이존) 운영	3,788,722	3,307,133	481,589	12.7%	건물 확보 등의 사유로 신규 아이존 1개소 추가확대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4	정신건강과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1,172,000	887,000	285,000	24.3%	하반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1개소 확대 예정이었으나, 해당 시설이 국고보조를 받는 권역형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5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556,442	1,730,605	670,837	26.2%	코로나19 확산 완화로 방역물품 지원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6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84,350,086	243,792,298	138,868,578	36.1%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액 변동(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17	코로나19대응지원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126,572,590	117,950,637	2,107,629	1.7%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액 변동(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18	코로나19대응지원과	코로나19 검사소 설치 운영	2,500,000	2,198,496	301,504	12.1%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허용(3월) 및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세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량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19	공공의료추진단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3,700,000	1,187,484	114,316	3.1%	서남병원 증축 설계용역비 관련된 예산으로 계약체결 후 잔여 집행잔액 발생
20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473,403	2,957,325	339,114	9.8%	코로나19 민간검사기관 확대에 따른 선별진료소 축소운영(인건비) 및 신규입원 중단에 따른 세탁물 등 처리량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21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1,959,481	1,809,671	149,810	7.6%	코로나19에 따른 신규입원 중단으로 급식용역 집행잔액 발생
22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743,249	479,883	263,366	35.4%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민간검사기관 확대(3월)에 따라 선별진료소 PCR검사 건수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
23	은평병원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801,697	1,433,342	368,355	20.4%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수련생 미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
24	은평병원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2,352,284	1,840,490	511,794	21.8%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입원환자 식수 급감 등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5	은평병원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1,820,281	1,656,337	163,944	9.0%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처방감소 등으로 인해 조제의약품 사용량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26	은평병원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 추진	1,487,000	-	100,000	6.7%	리모델링 공사 시 병원 이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병원 이전 없이 리모델링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27	은평병원	기본경비	1,204,431	1,095,713	108,718	9.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회의 및 행사축소와 환자 및 내원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28	서북병원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432,943	3,979,744	453,199	10.2%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5월)에 따라 확진자병동 기간제근로자 운영중단 및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29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공의료서 비스 수준 관리	5,249,111	4,651,072	568,640	10.8%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준공 후 정산잔액 및 코로나19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로 급식용역 집행잔액 발생
30	서북병원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562,091	3,147,088	415,003	11.7%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라 입원환자 및 검사 건수 감소로 약품 및 의약외품 집행잔액 발생
31	서북병원	서북병원 결핵관리사 업(국비)	380,900	87,326	146,787	38.5%	코로나19로 인한 결핵 관리사업 축소운영 (대면 간담회, 행사 중 단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한 병원 자 체 결핵 사업 축소운영) 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32	서북병원	기본경비	2,574,266	2,413,596	160,670	6.2%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

###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625억 29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은 46억 4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74억 73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6억 6000만원임.

〈표-15〉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2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62,529	△12,869	4,604	17,473	49,660

- 2022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수입은 ‘예탁금 회수(62.2%)’와 ‘예치금 회수(23.4%)’, ‘융자금회수(0.06%)’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융자성사업비(46.0%)’, ‘예치금(45.6%)’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16〉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32,133	계	32,133
융자금회수	2,005	비용자성사업비	2,684
예탁금회수	20,000	융자성사업비	14,787
		기본경비	2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예치금회수	7,529	기타지출	-
이자수입	1,319	예치금	14,660
기타수입	1,280	예탁금	-

- 식품진흥기금은 각각 융자성사업 1개, 비융자성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22회계연도 기금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17〉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항목별 사용현황

(단위: 천원, %)

사 업 명		2022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융자성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0,000	14,786,950	74%
비융자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40,900	40,200	98%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200	554,189	10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89,886	97%
	음식문화 개선	102,000	79,856	78%
	싱겁게 먹는 실천배움터 운영	344,000	342,173	99%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99,400	182,030	91%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95,000	88,240	93%
	먹거리전략 식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200,000	143,191	72%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107,156	106,180	99%
	식품안전 전문교육	55,000	52,250	95%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91,495	99%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3,900	97%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71,400	65,750	92%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120,000	119,700	100%
	뉴노멀 시대, 먹거리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4,250	54,331	85%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50,972	92%	
기타	기금관리비	5,000	1,800	36%

- 또한 집행부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민간용자지원 사업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음. 기존 민간 용자지원사업이 시설 개선자금, 육성자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법 및 고시가 제·개정 됨<sup>10)</sup>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용자’를 시작하게 됨.
  - 해당 사업은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용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하게 되어 있음.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업소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용자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18〉 2022년 식품진흥기금 민간용자지원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신청 현황		용자 집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30	2,216,480	15	1,444,950
육성자금	8	630,600	6	425,000
<b>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b>	1,524	30,238,000	684	12,917,000
합 계	1,562	33,085,080	705	14,786,950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식품진흥기금 사업 위임행정규칙」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한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용자

## 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1) 사업현황

-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은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임.
- 시는 21년 11월에 참여자 5만 명을 모집해 22년 7월까지 ‘1차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현재 진행 중(23년 8월 종료 예정)인 ‘2차년도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9세~69세 서울시민 18만 명임.
- (2022년도 ‘손목닥터9988’ 예산 관련 시의회 논의사항) 시민건강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은 ‘손목닥터9988’ 사업의 ① 추경의 시급성, ②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2차년도 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103억원 → 93억원)한 바 있음<sup>11)</sup>.
  -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 1차년도 사업(온서울 건강온)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년도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103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함. 이에 위원들은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2차년도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경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sup>12)</sup>.

11) 자료: 2022.08.25., “추경에 93억원 늘어난 '손목닥터 9988'.. '선심성' vs "건강 예방"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https://v.daum.net/v/20220825095800358>

12) 자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2022. 7. 22.) 회의록

## 2) 검토의견

첫째,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 2021회계연도에 이어 예상한 바와 같이 2022회계연도에서도 과도한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

- (2021회계연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은 예산현액 44억 7500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중 15억 2260만원을 사고이월<sup>13)</sup>하고, 4억 7440만원이 불용된 바 있음.
- 당시 사업부서는 ① 헬스케어매니저 인건비를 당초 4개월 기준 편성하였으나, 사업일정상 채용이 지연되어 1.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 발생(1억 5950만원), ② 낙찰 차액 등(3억 1490만원)을 불용사유로 제출함.
- (2022 회계연도) 이번 2022회계연도에서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은 예산현액 143억 7836만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중 73억 3830만원을 사고이월<sup>14)</sup>하고, 5억 8738만원이 불용됨. 사업부서는 ① 중도퇴

- 유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니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진행이 11월이네요. 그러면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이 11월이면 과연 연내에 끝날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그다음에 지금 1차년도에도 들어보면 안 끝났는데 2차년도에 또 20만 명에 대한 그런 구매하고 사업 진행을 보면 분명히 끝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과연 시급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내에 끝내는 사업인지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1차년도도 제대로 어떤 평가나 그런 내용도 없는데 2차년도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것마저 연내 집행을 못하고 불용하면 이 돈을 재원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면 조금 고려하고 생각할 점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13) 이월사유: 서울형스마트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단가계약 체결(2021.10.29.) 이후 사업자 모집완료하였으나, 사업참여자 승인·배송·연동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납품기한 연장됨에 따라 계약대금 지급잔액 이월

14) 이월사유: (공공운영비) '추경예산 편성이후'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도구 구매' 계약기간이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로 계약됨에 따라서 계약 준공기간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이월함. (연구용역비) '8월 추경예산 확정 후 발주 전 정보화사업 사전절차(과업심의회위원회, 행안부 사전협의, 정보시스템담당관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등)에 따른 시일 소요로' 22.9월 사전공개 및 본공고 실시 등 3분기에 발주. '10월 단독응찰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후 용역사업자 수의계약( 22.11.9.~ 23.3.8., 용역기간 4개월) 체결로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보상금)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 도구 구매' 계약기간이 22년 11월부터 23년 12월로 계약됨에 따라

사자 발생으로 추가 채용 진행 기간 인건비 잔액 발생(2억 4819만원),  
 ② 낙찰 차액 등(3억 3919만원)을 불용사유로 제출함.

〈표-19〉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 (C)	보조금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4,378,361	6,452,679	7,338,300	-	587,382	4.1

-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추경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시의회의 우려 속에서도 ‘2차년도 사업’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2021회계연도에 이어 2022회계연도에서도 역시 과도한 사고이월과 불용액을 발생시켰음.
- 향후 시민건강국은 추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계획 일정에 맞는 사업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둘째,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 내년 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에서 2차년도 사업(2022년)의 효과성과, 3차년도 사업(2023년)의 추진 일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4차년도 사업(2024년)의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손목닥터9988’ 예산 관련 시의회 논의사항) 시민건강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서 계약 준공기간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이월함.

서 위원들은 ‘손목닥터9988’ 사업의 ① 연내 집행 가능성, ②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을 우려한 바 있음. 하지만, 과거보다 사업의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본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그 취지에는 공감<sup>15)</sup>하여 ‘3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270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었음.

- 서울시는 매년 추경으로 사업을 받다 보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항상 예산을 이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안되었다며,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으로 주신다면 제대로 된 1년짜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손목닥터9988’ 2차년도 사업(2022년)의 대상자 모집(18만 명)과 사업추진 일정(스마트밴드 배송·연동 등) 등은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음. 이에, 본 예산으로 270억원을 확보한 ‘3차년도 사업(2023년)’의 경우에도 추후 3기 참여자 모집(22만 명)에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해봤을 때, 2023회계연도에서도 과도한 사고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15) 자료: 제315회 정례회 2023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22. 11. 28.) 회의록

- 운영회 위원: 스마트밴드 사업이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 운영회 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신다면 제가 볼 때에는 또 사업은 지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건강국: 위원님 질문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경으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앞단에 사전절차를 하고 구매라든지 업체 정하고 대상자를 정하는 데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의 사업인데 항상 추경으로 두 번을 받다 보니까 항상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들께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 2023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으로 주신다면 제대로 된 1년짜리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 운영회 위원: 추경사업 예산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고, 단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본예산에서 정책연구 부분이 있는데 비용편익 연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십니까?

- 이처럼 '추진계획 일정에 맞는 사업관리'가 되지 못하게 되면 예산은 다시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연달아 다음연도 사업의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년(2024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서울형 헬스케어 '손목닥터9988' 사업 투입된 예산과 실제 모집인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향후 상향된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시민건강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93억원의 예산을 확보, 실제 18만명의 참여자 모집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겨우 5만명으로 설정하는 등 투입된 예산과 추진계획 대비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성과로 설정하고 있음.
- 향후, 시민건강국은 투입된 예산과 실제 모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민과 시의회가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목표치를 성과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20〉 건강생활 기반조성으로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인원 수(명)	서울형 헬스케어 참여 신청인원	목표	50,000	50,000
		실적	50,107	50,107
		달성률(%)	100%	100%

자료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2023. 5.),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p156

## 나.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 1) 사업현황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제3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라 설치·운영<sup>16)</sup>되고 있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업무로는 i) 필수사업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이 있으며, 이외에도 ii) 지역특화 사업으로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찾아가는 심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구분	사업영역	세부사업
필수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질환자 조기발견</li> <li>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li> <li>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li> <li>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li> </ul>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 위기개입업무</li> <li>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구성·지원</li> <li>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li> </ul>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li> <li>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li> <li>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li> <li>중독관리업무</li> <li>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지원사업</li> </ul>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우울예방 등 광역단위 재난심리지원업무</li> </ul>
	찾아가는 심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가는 심리지원</li> <li>마음안심버스 운영</li> </ul>
	재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복지센터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li> <li>주간재활프로그램</li> </ul>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li> <li>지역사회 협의체 운영지원</li> <li>정신질환 정신건강인식개선 등 지역단위 홍보·캠페인</li> </ul>

※지역 인구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 필수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사업 추진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 202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p42.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 ⑨ <생략>.

- 2022년 기준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5개소(자치구별 1개소)에는 종사자 336명과 정신전담인력 50명(구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85억 8643만원과 20억 6850만원을 편성함. 또한, 별도로 지역 센터 평균 인건비와 국비 인건비 차액의 50% 수준의 인건비(확충 인력 56명)를 보전하기 위해 1억 6800만원을 포함해 총 인건비 108억 2293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2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2022년 최종예산

과목 구분	매칭	2022년 최종 예산	지출액 (교부액)	집행잔액
자치 단체 경상 보조 금	시비 50 :구비 50	○ 인건비(336명) = 8,586,429천원	8,564,841천원	189,588천원
	시비 100	○ 국비 인건비 보전분 3,000천원 × 56명 = 168,000천원  ※ 국비 인력 인건비 37,440천원으로 센터 종 사자 평균 인건비 43,000천원 대비 6,000천원 정도 부족, 같은기관 같은 업무를 할 경우 같은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국비 인력 56명에 대한 보전금을 시비(50%)로 확보		
	시비 50 :구비 50	○ 운영비 = 758,517천원	758,517천원	-
	시비 100	○ 정신건강 전담인력 지원 41,370,000 × 50명 = 2,068,500천원	1,830,965천원	237,535천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형태

- 1)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비전문요원으로 채용
- 2) 정신건강전담인력 : 시간선택제임기제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자치구별로 상이함)

- (2022회계연도)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4억 27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부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전담인력 잦은 퇴사 등 채용 어려움 발생”을 인건비 불용사유로 제출함.

〈표-22〉 2022년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상세사유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	11,581,446	11,154,323	427,12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전담인력 잦은 퇴사 등 채용 어려움 발생하여 인건비 불용액 발생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2) 검토의견

첫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잦은 퇴사와 채용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정신건강 전담 인력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등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현황’을 살펴 보면, 충원율은 91.7%로 나타나 정원 대비 현원이 2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23〉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336
현원	303	304	306	305	315	316	313	311	309	309	313	308
충원율	90.2	90.5	91.1	90.8	93.8	94.0	93.2	92.6	92.0	92.0	93.2	91.7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충원율은 78%로 나타나 정원 대비 현원이 9명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24〉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담인력 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41
현원	28	33	35	36	38	38	35	36	34	33	33	32
충원율	68.3	80.5	85.4	87.8	92.7	92.7	85.4	87.8	82.9	80.5	80.5	78.0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총 105회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신규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정신건강사업의 높은 업무강도(정신질환자 대면상담, 응급출동 등), 대민업무 고충에 따라 경력직 지원자가 없어”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함.

〈표-25〉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채용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구분	공고연월	정원	모집인원	신규채용	현원	채용이 어려운 사유	
1	2022년 1월	336	17	6	303	○ 정신건강사업의 높은 업무 강도(정신질환자 대면상담, 응급출동 등), 대민업무 고충에 따른 적합한 경력직 지원자 없어 채용 어려움	
2	2022년 2월	336	22	12	304		
3	2022년 3월	336	9	11	306		
4	2022년 4월	336	22	15	305		
5	2022년 5월	336	14	14	315		
6	2022년 6월	336	14	14	316		
7	2022년 7월	336	15	15	313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직자로 단기간 근무 지원자 부족함
8	2022년 8월	336	14	14	311		
9	2022년 9월	336	22	22	309		○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원자 없음
10	2022년 10월	336	16	16	309		
11	2022년 11월	336	12	12	313		
12	2022년 12월	336	16	16	308		

-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총 39회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신규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자가 없고, 근무조건(단기간, 급여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력자”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함.

**〈표-26〉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담인력  
채용현황(25개 자치구)**

(단위: 명)

구분	공고연월	정원	모집인원	신규채용	현원	채용이 어려운 사유
1	2022년 1월	41	7	3	28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지원자 없음  ○ 사업의 업무특성 고려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력자 채용 어려움  ○ 근무조건(단기간, 급여 등)에 맞는 지원자 부족
2	2022년 2월	41	8	5	33	
3	2022년 3월	41	2	3	35	
4	2022년 4월	41	4	3	36	
5	2022년 5월	41	7	3	38	
6	2022년 6월	41	1	2	38	
7	2022년 7월	41	3	3	35	
8	2022년 8월	41	3	1	36	
9	2022년 9월	41	1	1	34	
10	2022년 10월	41	4	2	33	
11	2022년 11월	41	3	2	33	
12	2022년 12월	41	3	3	32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2021년 국정감사 자료<sup>17)</sup>에 따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과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중심의 역할에서 최근에는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공공정신건강서비스 주요 전달체계로 역할하고” 있지만, “한 명의 사례관리자가 155명에 달하는 등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 등, 확대된 역할에 비해 여전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음.

17) 자료: 김춘호, 2021.10.06., “[2021국정감사] 1명이 정신질환자 155명 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족 심각”, 민족의학신문,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3493>

- 이와 같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 미충원 상황이 지속된다면 센터 업무의 공백을 야기하고 기존 인력의 업무는 과중되어 원활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시는 전문 인력 미충원 및 잦은 퇴사에 따른 불안정한 인력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담 인력의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5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로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서울시와 경찰이 합작해 만든 전국 최초 기구인 ‘정신응급합동 대응센터’ 역시 정신건강 전문요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무 강도와 작업환경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기존에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문제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주간에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이 협력하여 운영해왔지만,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구축(지난해 10월 17일부터 시범운영)하여 현재는 24시간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야간, 휴일에도 운영하고 있음.
-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지난달까지 6개월간 총 1291건을 접수받아, 경찰관들이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히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서비스를 992건 제공함. 또한 자·타해 위험성 등이 높아 전문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한 건은 299건임<sup>18)</sup>.

18) 자료: 이재은, 2023.05.22., “'서울시, '정신응급합동센터' 운영 6개월간 1291건 접수”, 뉴시스,

- 이처럼 서울시와 경찰이 합작해 선도적으로 만든 ‘서울시 정신응급합동 대응센터’ 역시 개소 이후 8개월째 목표 인원을 못 채워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정신건강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대응센터는 6월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음. 이는 목표 정원 38명보다 8명 적은 인원임. 계획대로라면 대응센터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26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돼야 함. 경찰은 상주 경력 12명을 확보했으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가 18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충원율 69.2%)임.

〈표-27〉 2022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2년 10월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경찰	정신건강응급전문요원
정신건강응급합동대응센터	12	22	12	22	12	22	12	26	12	26	12	26	12	26	12	26	12	26
경찰	12	7	12	9	12	12	12	13	12	13	12	17	12	18	12	18	12	18
정신건강응급합동대응센터	100	31.8	100	45.4	100	54.5	100	50	100	50	100	65.3	100	69.2	100	69.2	100	69.2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정신응급합동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7회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모집인원 대비 신규 채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정신응급합동센터에서는 ‘정

신건강전문요원' 채용이 어려운 사유로 “장시간 야간근무, 정신응급현장 대응 등 업무강도에 따른 위험 부담이 커” 전문요원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함.

〈표-28〉 2022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공고연월	정원	모집인원	신규채용	현원	채용이 어려운 사유
1	2022년 10월	22	15	1	7	○ 장시간 야간근무 등의 특성으로 응급 현장 전문요원 채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움  ○ 정신응급현장 대응 등 업무강도에 따른 위험 부담
2	2022년 11월	22	13	1	9	
3	2022년 12월	22	10	3	12	
4	2023년 1월	26	13	1	13	
5	2023년 2월	26	13	0	13	
6	2023년 3월	26	10	3	16	
7	2023년 4월	26	8	2	18	
8	2023년 5월	26	8	0	18	
9	2023년 6월	26	8	0	18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적사항) 이러한 문제점은 2022년도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2022. 9. 20.)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sup>19)</sup>.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개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출동요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야간과 주말에 3교대로 근무하는 등 업무강도는 높지만 낮은 처우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안이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꾸준히 채용을 시도했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던 채용도 5차례에 달한다고 말했으며, 경기 지역의 2차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대응센터 월급<sup>20)</sup>이 민간 병원 간호사 월급과 비교해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차이가

19) 자료: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 운영회 위원 : 운영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국장님. 한겨레에 9월 1일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신질환자 입원 위해 5시간 뱅뱅이 도는 경찰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7월 말에 정신응급의료 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 정신응급의료 체계 정비를 지시도 하셨어요.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6월이나 7월 연이어서 송파나 서초에서 정신질환자분들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을 한다든지 차량 매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보고를 받고 기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언제 개소하시죠?

- 시민건강국: 지금 저희들이 11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밤에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해서 액팅아웃을 하게 되면 경찰이 가서 감당이 안 되고 또 저희들 정신보건요원이 가셔도 감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다 보니까 대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들은 이번에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경찰하고 저희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만약에 밤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경찰과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센터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 운영회 위원: 아마도 첫 센터고 광역센터 개념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잘 하되 이제 가좌역의 위치가 서울 전역에 신속하게 응급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운영인력의 목표가 있으시던데 몇 명 채용 계획이신가요? 혹시 시민건강국장님 몇 명 채용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 시민건강국: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챙겨보니까요 지금 현재 행정요원 4명은 했는데 출동요원은 3명만 뽑힌 상태이고요. 조금 빨리 한다고 6월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단의 자살예방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정신전문요원들을 뽑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는데 이것도 조금 임금하고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거 시비하고 같이 보조를 줄 때 낮은,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들 중심의 임금데이블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복지부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역 정신센터 안에 정신보건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조금 같이 활용을 해서 뽑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교대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비상상황에 대해서는 플랜B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운영회 위원 : 그래서 저도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또 같이 공유드리고자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이 야간하고 주말에 3교대로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인건비가 실수령 기준 260만 원이고 이분들이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분들인데 인건비가 왜 지원자가 0명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마련하고 계신 대안이 기존 인력 뱅뱅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인력들은 또 업무가 가중될 텐데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20) 대응센터에 지원자가 적은 이유는 근무 강도는 높지만 급여는 민간 병원과 비교해 적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가 대응센터에 들어오면 보통 4급 직급으로 일을 시작한다. 4급 1호봉 기준 월 기본급여는 228만5000원 수준이고 5호봉의 월 기본급여는 243만6000원이다.

난다”며 “야간 교대 근무에 급작스레 정신질환자를 조치하려 출동해야 하는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매력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하였음<sup>21)</sup>).

- 따라서 앞서 언급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더불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구축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가 안정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무 강도와 작업환경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과 기존 인력의 소진방지를 위한 운용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1) 자료: 김태호, 2023.05.01., “서울시·경찰 손잡고 만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6개월째 인력 부족”,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5/01/TXJ52SV7RFBSXDVIDXIYJM2UJQ/](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5/01/TXJ52SV7RFBSXDVIDXIYJM2UJQ/)

## 다.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 필요성

### 1) 사업현황

- 정신건강통합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탁 기관임. 정신건강통합센터는 2022년도 총예산액 16억 5802만원 중 2억 4048만원을 반납하고<sup>22)</sup> 14억 1754만원을 집행함.

〈표-29〉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보조금 결산서

(단위:원)

구분	총예산액 (A)	집행액					집행잔액 (A-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 누계(B)	
민간 위탁금	1,658,028,000	314,515,843	297,432,142	366,201,337	439,391,481	1,417,540,803	240,487,197

자료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제출자료

### 2) 검토의견

첫째, 정신건강통합센터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만족도 조사 등의 경우 대표성 있는 설문 구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반납 : 인건비 : 104,162,062원 , 운영비 : 78,774,494원, 사업비 : 57,550,641원

- 정신건강통합센터가 당초 제출한 「2022년도 사업계획서(2022. 1. 1.)」 상에는 i) ‘**년간 목표대비 달성률(%)**’, ii)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사업평가의 기준**’으로 제출함. 그런데 사업계획서 상에 각 사업별 ‘**목표량**과, 「2022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결과보고서(2022. 12.)」 상에 ‘**목표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신건강통합센터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30〉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사업별 목표량**

구분		2022년 계획(사업목표량)	2022년 결과(사업 추진실적)
종합 시설 (주간 재활 시설, 희망 아카 데미)	이용자 등록	50명 이용등록	50명 이용등록
	정신건강 관리 활동	20명*40회= 800건	<b>목표량은 2,400명, 추진실적 106.8%(2,564명)</b>
	일상생활 관리 활동	아침모임 20명*5회*40회=4000건 지역사회적응훈련 10명*40회=400건 인권교육 30명*2회=60건 캠프 50명*2회=100건	목표량은 5,200명이며 추진실적 66%(3,466명)
	심리정서 치유활동	무용동작치료 40회*10명=400건 글쓰기 및 캘리그래피 활동 40회*10명=400건 음악활동 40회*10명=400건	목표량은 1,200명이며 추진실적 82%(985명)
	직업적기 능 향상활동	직업재활 지원 월평균 5명*30주=150건 사업체 및 연계 활동처 방문 월4회*12개월=48건 직업 기능 향상 훈련 평균 8명*40주= 320건	<b>목표량은 878명이며 추진실적 88.9%(781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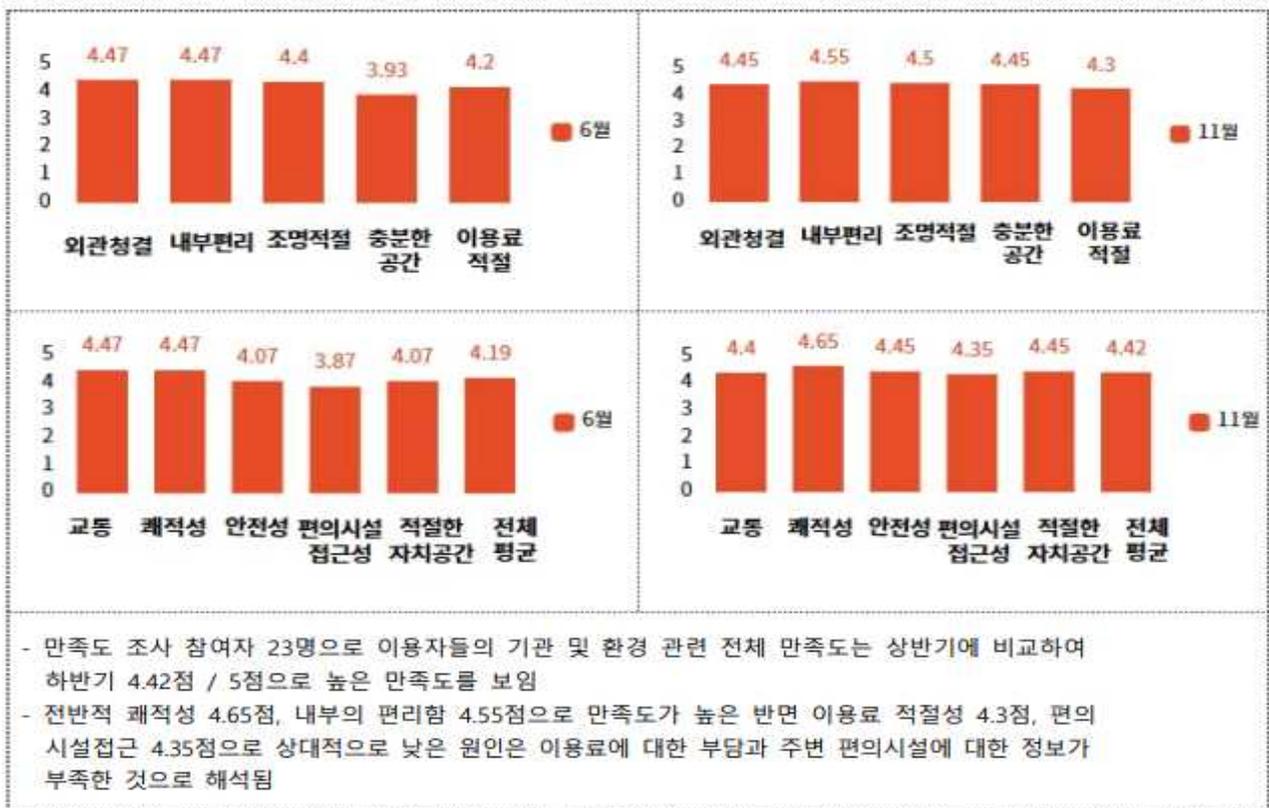
		연계 취업 지원 2명*12월=24건 고용주 간담회 및 고용주 상담: 년2회	
	여가취미 활동	친밀감을 높이는 레크레이션 40회기*10명*400명 독서와 글쓰기 활동 40회기*10명=400명 취미공예체험 등 40회*10명=400명 건강식습관 쿡킹 40회기*80명=320명	<b>목표량은 1,120명이며 추진실적은 43.9%(492명)</b>
취업 지원 운영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 평가	180명	목표량은 630명이며 추진실적은 129.2%(814명)
	취업기능 향상 아카데미 운영	600명	목표량은 456명이며 추진실적은 109.8%(501명)
	취업알선 및 취업유지 지원	1,312명	목표량은 228명이며 추진실적은 74.1%(169명)
	사업체 개발 및 관리	468건	목표량은 264건이며 추진실적은 62.1%(164건)
	직종별 직업실무 훈련교육	968명	목표량은 788명이며 추진실적은 174.7%(1,377명)
통합 지원 사업( 문화 예술 플러 스아 카데 미)	문화예술 플러스 아카데미	11개 프로그램*5명*4분기=2,200명	목표량은 3,160명이며 추진실적은 110%(3,485명)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 서비스 제작 및 운영	6편	목표량은 16편이며 추진실적은 118%(19편)
당사 자 및 가족 지원	당사자 자조집단 역량강화 교육(동료	10회기*5명=50명	목표량은 50명이며 추진실적은 786%(393명)

사업	지원가 양성과정		
	가족 자조집단 역량강화 교육(가족 활동가 교육)	10회기*5명=50명	<b>목표량은 50명이며 추진실적은 32%(16명)</b>
	당사자 및 가족문화 예술 활동가 양성과정	10회기*5명=50명	목표량은 50명이며 추진실적은 932%(466명)
지역 복지 사업( 특화 사업)	정신건강 전문 예술강사 관리사업	정신건강전문 강사 양성과정 5회기*5명*2분기=50명 정신건강전문 문화예술 강사 간담회 2회*15명=30명	목표량은 50명이며 추진실적은 190%(95명)
	정신건강 주제 문화예술 작품 공모전	참가자 및 작품 50건 내외	<b>목표량은 1회이며 추진실적은 100%(1회)</b>
	정신건강 관련 지역주민 및 통합지원 참여자가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당 10개 이상 작품 선정	<b>목표량은 1회이며 추진실적은 100%(1회)</b>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 과 함께 하는 정신건강 문화행사	목표량 없음	<b>목표량은 2회이며 추진실적은 50%(1회)</b>

○ 또한 정신건강통합센터가 제출한 「2022년 결과보고서」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외관청결, 조명적절 등을, ‘기관 및 환경 관련 만족도 조사’ 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설문 내용과 구성이 정신건강서비스의 개발 보급이라는 설립 취지를 가진 정신건강통합센터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기관의 만족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적합한지 의문이 듦. 향후 만족도 조사 등의 경우, 보다 기관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 구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표-31 참고).

〈표-31〉 2022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의 ‘기관 및 환경 관련 만족도 조사’

나. 기관 및 환경 관련 만족도 조사



자료 :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사업 만족도 조사, p16

둘째, 정신건강과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23)에 따라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에는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2022년 12월 28일 정신건강과는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사항은 모두 0건으로 평가되었음.

**<표-32> 2022년 하반기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지적사항

지적사항(건)								조치사항(건)				
계	일·퇴근관리	시설·환경관리	안전관리	중사·차량관리	회계관리	장부관리	기타	계	개선명령	분종·분회수	고발	기타
0	-	-	-	-	-	-	-	0	-	-	-	-

조치요구 사항

○ 조치 후 결과보고 건

지적사항 및 특기사항	조치 후 결과보고 건
해당없음	해당없음

- 2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통합센터가 당초 제출한 「2022년도 사업계획서」 상에 각 사업별 ‘목표량’과, 「2022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결과보고서(2022. 12.)」 상에 ‘목표량’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 제대로 된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일부 사업 (여가취미 활동, 가족 자조집단 역량강화교육(가족활동가 교육), 지역 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정신건강문화행사)들의 목표 달성률은 60% 미만으로 나타나 사업 보완계획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런데 서울시의 <지도·점검 결과표>에는 ‘사업성과 달성’을 포함해 모든 항목을 ‘양호’로 평가하고 지적 및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 바,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민건강국은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33〉 2022년 하반기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지도점검표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을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